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mall>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small>	規 定 集	4-3-28-3	1/1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 일 2022.11.30.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개정(안)

제정: 2020.02.03.

개정: 2020.02.14.

개정: 2022.02.22.

개정: 2022.11.3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이하 “본교”)에서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상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와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 문화 정착을 위해, 학생연구자 처우, 인권 및 권익보호 및 학생인건비의 체계적인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연구개발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규정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 과제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본 규정의 학생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석사학위과정 중에 있는 학생 신분의 연구자를 의미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학생연구자에 포함하여 활용할 수 있다.

1. 휴학생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2. 수료생 중 해당 기관의 연구생으로 등록 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
3. 신규 또는 후속 연구개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연구자


제2장 책임과 의무

제3조(산학협력단의 의무)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인권 보호 및 관리감독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3. 전산시스템 구축 등 효율적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체계 마련에 관한 사항
4. 학생연구자의 연구참여확약서(별지 제1호 서식) 체결, 상해사망에 대비하는 보험 또는 「연구실 안전법」에 따른 보험 가입에 관한 사항
5. 학생인건비 부당회수(미지급 포함) 방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학생연구자 제도 운영을 위해 산학협력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연구책임자의 의무) 연구책임자(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small>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small> <small>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small>	規 定 集	4-3-28-3	2/1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일 2022.11.30.	

1. 학생연구자와 협의하여 연구참여확약을 체결하고 신의와 성실에 따라 준수
2. 학생연구자를 성실히 지도하고 연구윤리 및 연구보안을 준수
3. 학생연구자에 대한 학생인건비·연구수당 지급, 연구개발 성과에 대한 권리 보장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리

제5조(학생연구자의 의무)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1. 연구책임자의 지도에 따라 연구참여확약서에서 정한 담당업무를 신의와 성실에 따라 수행
2. 연구수행 시 연구윤리 및 보안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특이사항은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3. 학적변동, 업무수행 불가능, 취업 및 학생인건비 외 소득 발생 등 변경사항 발생 시 연구책임자 및 산학협력단과 사전 협의 및 변경사항 통보

제6조(연구실 운영기준 마련) 연구책임자는 연구실 내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처우,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졸업요건, 업무량 및 휴일 등 연구 환경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을 마련·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 활동 보장


제7조(연간 활용계획 수립)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 운영 규모, 구체적 역할 및 처우 등을 포함한 학생연구자 연간 활용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책임자는 전년도 활용인원, 연구개발과제의 규모 및 학생인건비 재원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참여확약 체결) 산학협력단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간 활용계획에 따라 학생연구자와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고 학기(또는 학년) 단위로 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연구참여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연구주제 및 분야, 참여과제명, 연구수행내용, 역할, 참여기간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
2. 금전적 보상, 학생인건비 부당 회수 금지, 안전 및 인권·권리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
3. 연구개발업무와 무관한 업무는 명시 불가

제9조(연구참여확약 변경) 연구책임자와 학생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만 협의를 거쳐 연구참여확약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을 산학협력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변경·중단·해약
2. 학생연구자 학적 변동
3. 학생연구자 개인의 사정 및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	規 定 集	4-3-28-3	3/1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일 2022.11.30.	

제10조(업무범위 제한)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협약에 명시되지 않은 학내외 기여·봉사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해서는 안 된다.

제11조(학업·연구권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자율적인 연구 활동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부당업무 거부권 보장) 학생연구자는 연구참여확약서 내용과 무관한 업무 등 부당 업무를 거부할 권리를 가지며, 연구책임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장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제13조(학생인건비 지급기준) ① 학생인건비는 계상률 100%를 기준으로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연구비관리지침」에서 정한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금액을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16조 제1항에 따라 「학술진흥법」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중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학생인건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7]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른다.

③ 그 밖에 협약 및 사업공고에서 명시하는 사업의 경우 각 기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학생인건비에 대한 지급기준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학생인건비 안정적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를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지급 할 수 있도록 대학 내 학생인건비 산정 기준 마련, 균등 지급 체계 마련, 학생인건비 재원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연구 참여 정도에 따라 학생인건비를 산정하며, 연구성과에 따라 연구수당·기술료 보상을 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학생연구자별 학생인건비 산정)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별 인건비 산정 시 연구 참여 내역, 참여기간 및 참여시간 등을 고려하여 계상률이 100% 초과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제16조(학생인건비 지급)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가 적절히 작성되었는지 등을 확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매월 25일 학생연구자 개인명의 계좌로 학생인건비를 이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항(과제협약 및 연구비 입금지연 등의 사유)이 발생할 경우 산학협력단장의 승인 후 지급일을 변경하여 소급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학적이 변동(졸업, 학위 변경, 휴학, 제적 등)되거나 계상률이 변경될 경우 매월 15일까지 연구참여확약 변경에 관한 서류를 산학협력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mall>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small>	規 定 集	4-3-28-3	4/1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일 2022.11.30.	

제17조(학생인건비 관리)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사용자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행정시스템 구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학생인건비 관리 등을 위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자체 점검) 산학협력단은 동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연 1회 이상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학생인건비관리 자체점검표를 활용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자체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빠른 시일 내에 조치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학생인건비 부당회수 금지) ① 누구든지 학생인건비를 학생연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를 회수하여 관리 또는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산학협력단은 학생인건비 집행에 대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산학협력단 홈페이지에 연구비 집행 부정행위 신고창구를 상시 운영한다.

③ 연구비 집행에 대한 부정행위가 접수되면 산학협력단 감사 부서에서 파악하여 산학협력단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교내 연구윤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장 학생인건비 인권 및 권익보호

제20조(인격권 보장) 폭언·폭행·성추행·성희롱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해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제21조(건강과 휴식 보장)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위하여 충분하고 적절한 휴식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보장)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23조(재정운영 정보 공개) 학생연구자는 본인이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행현황, 학생인건비 규모 등에 대한 정보를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학협력단 또는 연구책임자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타 학생연구자의 지출 내역 등 개인정보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4조(고충상담 창구 운영) ① 산학협력단은 연구참여확약서의 조건 위반 및 학생연구자와 연구책임자의 권리 침해 등에 대해 고충을 접수하고 상담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산학협력단이 학생연구자로부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받은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mall>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small>	規 定 集	4-3-28-3	5/1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 일 2022.11.30.	

③ 산학협력단은 제2항에 따른 노력에도 불구하고 관련 당사자 간에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학 내 **인권센터**에 따라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위반 시 조치) ①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 등이 동 규정을 위반한 경우 기관 내 제반 절차에 따라 연구책임자 등에게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② 학생연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연구책임자 등의 시정이 없거나 미비할 경우 대학 내 **인권센터**에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산학협력단은 학생연구자의 지도교수 변경, 연구책임자의 개인평가에 반영, 징계위원회 회부 등 조사결과에 신속하게 따른다.

부 칙(2020. 02. 03.)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02. 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0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 및 지침의 적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연구비 관리규정·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202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small>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small> <small>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small>	規 定 集	4-3-28-3	6/1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일 2022.11.30.	

[별지 제1호 서식]

연구참여확약서

연구책임자 ○○○과 학생연구자 ○○○은 다음과 같이 학생연구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신의와 성실로 준수하기 위해 동 연구참여확약서를 체결한다.

1. 학생연구자 인적사항

성명		학번		생년월일	
소속 (학과명)		과정	()과정 ()학기		
과학기술인번호					
주소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2. 연구참여정보

가. 참여기간:

나. 참여과제명:

다. 담당업무(역할):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라. 학생인건비 지급일: 매월 일

마. 지급방법: 학생연구자 명의 예금통장에 입금

※ 참여중단·종료 시 중단·종료일까지 참여한 업무 일(월 등)수에 대해 일할(월할 등) 계산하여 지급함.


바. 연구책임자

성명			
소속 (학과명)		직급	
연락처	(휴대전화번호)		(E-mail)

3. 기타 확약사항

가. 학생연구자는 연구 수행에 필요한 담당업무를 성실히 수행 한다.

나.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정당한 학업활동 및 연구활동, 충분한 휴식 등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mall>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small>	規 定 集	4-3-28-3	7/1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 일 2022.11.30.	

노력하고, 학생연구자 제도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한다.

다.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연구 내용과 무관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활동이나 사적 업무에 동원하지 않는다.

※ 연구수행내용, 역할 등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연구와 관련 없는 업무는 기재하지 않음
 라.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학생연구자의 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등 안전·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연구책임자는 인권, 양성평등, 윤리 등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고 학생연구자에게 폭언·폭행·성추행 및 성희롱 등을 포함한 제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바.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에게 지급된 학생인건비를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학생인건비부당회수)하지 않는다.

사. 학생연구자는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확약서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구기관에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다.

아. 학생연구자는 동 연구참여확약서에 따라 지급 받는 인건비 이외에 타 소득이 발생한 경우 연구책임자 및 소속된 연구기관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

자. 연구책임자는 학생연구자의 질병·실종·형사소추 등으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 연구참여확약을 취소할 수 있다.

붙임 학생인건비 지급정보<지급률 및 지급액(세금포함)>

년 월 일

학생연구자 : (서명 또는 인)


연구책임자 : (서명 또는 인)

연구비관리기관장 :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서명 또는 인)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귀하

※ 유의사항


- 연구참여기간은 가능한 해당연도 협약 기간 전체로 권고함
- 동 서식은 필요시 연구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함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mall>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small>	規 定 集		4-3-28-3	8/1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 일 2022.11.30.	

학생인건비 지급정보<지급률 및 지급액(세금포함)>

지급월	변경 전		변경 후	
	지급률	지급예정액	지급률	지급예정액
계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	規 定 集	4-3-28-3	9/1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일 2022.11.30.	

[별지 제2호 서식]

학생인건비관리 자체점검표


□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관련 점검사항

※ 점검 시 유의사항: 항목별 구체적 조항 및 실천방안 포함 여부 점검

구분	평가 항목	평가결과 (O/X)
권의 보호	학생연구자의 학업·연구개발활동 보장, 처우 개선, 인권·권의 보호 및 관리·감독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전산시스템 운영	제17조에 따른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포함	
수입·지출·잔액 관리	학생인건비 수입·지출·잔액 관리에 관한 사항 포함	
지급기준(계상률)	제13조에 따른 학생인건비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연구참여확약서	제8조·제9조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연구참여확약서 변경 사유 및 기타 확약사항의 상위 규정 준수 여부 등)	
부당회수 방지 노력	제19조에 따른 학생인건비 부당회수 방지에 관한 사항 포함 (부당회수 방지 계획 수립 등 실적)	

□ 지급관리체계 점검사항

구분	평가 항목	평가 내용	평가결과 (O/X)
학생인건비 지급 및 관리	학생인건비 관리	학생인건비의 수입·지출·잔액 현황 및 연도별 수입 총액 대비 잔액 비율 관리	
	학생인건비 지급대상관리	학생연구자의 학적 및 인사시스템 연동 (학생인건비 지급대상 확인)	
	학생인건비 지급·관리	적절한 학생인건비 지급 절차 구현 (학생연구자 지원규정에 따른 연구참여확약서 작성, 연구관리부서의 학생인건비 지급 승인 및 지급, 변경내역)	
	지급계좌관리 및 지급정보제공	1인1계좌 등록관리 지급기간의 지급예정정보(지급 계좌 정보, 지급예정일), 지급내역 학생 직접 확인	
	학생연구자 지급총액관리	학생연구자의 지급총액 관리(계상률 초과여부)	
	학생인건비 지급현황관리	학생인건비 지급 내역 확인 및 지급내역 대상 학생 직접 확인	
	시스템연동	통합관리기관의 전산시스템과 범부처연구비통합관리 시스템(통합이지바로, 통합RCMS) 상호연계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	規 定 集	4-3-28-3	10/1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 일 2022.11.30.	

학생인건비 부담집행 현황

<총괄표>

(단위: 원, %)

학생인건비 총액(A)	유용한 학생인건비(B)	유용 학생인건비 비율 (C=B/Ax100)
A	B	

<세부사항>

○최근 5년간(점검년-5년 1.1 ~ 전년도 12.31) 학생인건비 집행액


년도별 (연도별 1.1~12.31)	학생인건비 집행액(단위: 원)	비고
합계	A	

○최근 5년간 학생인건비를 회수하여 공동으로 관리 또는 사용한 금액

(단위: 원)

제재조치 대상 과제명	연구(협약)기간		제재대상 연구자명	학생인건비 유용금액	제재조치 결정통지일 (공문기준)	제재조치 기관	비고
	시작일	종료일					
합계				B			

- (작성기준) 점검년-5년 1.1일 이후 협약과제 부터 전년도 12.31일 이전에 종료된 과제까지의 학생인건비 유용금액

 서울미디어대학원대학교 <small>SEOUL MEDIA INSTITUTE OF TECHNOLOGY</small>	規 定 集	4-3-28-3	11/11
	학생연구자 지원규정	제·개정일 2022.11.30.	

[별첨]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학술단체지원사업 제외)

학생인건비의 계상기준과 인정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별표 7]

공통기준
1. 직접비는 인건비, 학생인건비, 연구시설·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로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 총액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를 인건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인건비를 직접비 내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원이 전임교원(「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운영 중인 대학정보공시제도의 대학정보공시 지침의 전임교원 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으로 임용되거나 「학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취업한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다음 각 목에 따라 다른 항목으로 사용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인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직접비 중 다른 항목으로 전용하여 사용 나.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가 아닌 경우: 연구수당으로 전용하여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지급
4.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의 경우 제86조부터 제11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자가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제86조부터 제9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5. 이 별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학생인건비
1.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학생연구자가 취업한 경우에 연구개발과제 참여를 중단하게 하여야 한다.
2.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서 학생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해당 학생연구자인 참여연구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른 금액을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참여연구자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가 아닌 다른 재원으로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인건비를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학사과정(전문학사과정을 포함한다)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